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5호 2008. 7. 30 (수)

【조 례】

- 조례제213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3
- 조례제21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6
- 조례제2132호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8
- 조례제2133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10
- 조례제2134호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폐지조례.....12

【규 칙】

- 규칙제113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13
- 규칙제11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20

【고 시】

- 고시제2008-63호 하천점용 허가.....29
- 고시제2008-67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30

【공 고】

- 공고제2008-427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중 장기 미개발지구 민자유치계획 사업제안서 제출 공고.....40
- 공고제2008-433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42
- 공고제2008-440호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45
- 공고제2008-445호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공시 공고.....46
- 공고제2008-446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47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25.

정선군조례 제213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미래기획단, 재무과”를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심판, 국가배상, 법제 및 소송업무”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중 “통계조사”를 삭제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제3조제2항제2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고객만족(CS) 업무”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통계조사
- 혁신분권,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제3조제2항제3의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중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산·부채 실사업무”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

제3조제2항제5호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우량가축 보급 및 사육기술 지도”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신활력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정선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③ 정선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정선군 여성회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정선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정선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⑨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⑩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⑪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⑫ 정선군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⑬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개 정 이 유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주민생활지원과와 재무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이 쇠퇴한 행정기구 폐지 (제3조)
 -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명칭을 변경함.
 -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을 변경함.
 - 기능이 쇠퇴한 미래기획단을 폐지함.
- 부서별 사무조정(제3조제2항)
 - 기획감사실 “통계조사”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
 - 미래기획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기타 지방분권 업무 총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하고, “혁신분권, 규제개혁”사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며, “신활력 사업”은 농업정책과로 이관
 -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세무회계과로 이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25.

정선군조례 제21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620인”을 “5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중 “608인”을 “55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 “12인”을 “11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안 이 유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주 요 골 자

- 총정원 : 564명 (△56명)
 - 집행기관 : 553명 (△55명)
 - 의 회 : 11명 (△1명)
- 직급별 정원의 조정
 - [별 표] 개정
 - 일반직 : △46명(5급 △1, 6급 △14, 7급 △17, 8급 △16, 9급 증4, 농촌지도관 △1, 농촌지도사 △1)
 - 기능직 : △10명(기능7급 △2, 기능8급 △12, 기능9급 △7, 기능10급 증11)

정선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정무직	1	1	0	0	0	0	0
군 수	1	1	0	0	0	0	0
일반직	433	211	6	52	20	65	79
4 급	1	1	0	0	0	0	0
4~5급	3	2	0	1	0	0	0
5 급	23	9	2	2	1	4	5
6 급	118	65	3	8	5	17	20
7 급	132	69	1	17	7	15	23
8 급	102	41	0	18	5	19	19
9 급	54	24	0	6	2	10	12
연구직	1	1	0	0	0	0	0
연구사	1	1	0	0	0	0	0
지도직	19	2	0	17	0	0	0
지도관	2	0	0	2	0	0	0
지도사	17	2	0	15	0	0	0
별정직	12	0	0	12	0	0	0
6급상당	11	0	0	11	0	0	0
7급상당	1	0	0	1	0	0	0
기능직	98	47	5	5	7	20	14
6 급	3	3	0	0	0	0	0
7급	9	6	0	1	2	0	0
8 급	13	5	1	0	1	6	0
9 급	31	11	2	2	1	8	7
10급	42	22	2	2	3	6	7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25.

정선군조례 제2132호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본문중 “교육에 필요한”을 “교육에 소요되는”으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 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20464호 법제명 변경과 일부개정(2007. 12. 28) 및 보조기준액의 조정을 위해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의 법제명 변경(제1조)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변경
- 보조사업의 범위 변경(제2조)
 -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보조기준액 단서 신설(제3조)
 -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채원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20%를 초과하는 단일사업의 사업비는 미포함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25.

정선군조례 제2133호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3호 및 제2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 정 이 유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기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稅)부담을 완화하고자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등 군세 감면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기 등록(07.12.31이전)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5,000원을 적용 조세부담 완화 (제18조제1호 전단)
- 신규등록차량(08.1.1이후)은 다른 7~10인승과의 균형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면규정 적용 (제18조제1호 후단)

구 분	현 조 례	개 정 안	
		기등록차량	신규등록차량(08.1.1이후)
2008	승용자동차세의 66% 경감	65,000원	현행과 동일
2009	승용자동차세의 33%경감	65,000원	현행과 동일

- 2008.6.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부칙 제2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25.

정선군조례 제2134호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폐지조례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본 조례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시행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고, 제정 근거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
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 하고자함.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25.

정선군규칙 제1130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자치행정과장·미래기획단장·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제4조제13호 및 제56호부터 제62호까지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5조부터 제70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5. 지방분권시책추진
- 66. 균형발전 시책 추진
- 67.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 68.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 69.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70. 공무원 제안제도

제5조제목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 제18호중 “제안제도 운영(제도개선 포함)”을 “제도개선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85호부터 제96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5. 국제협력 관련업무
- 86.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 87. 인구주택, 산업, 농업총조사
- 88.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고용구조 조사
- 89. 광공업 통계조사
- 90. 지역내 총생산 추계
- 91. 도시연감 자료조사 및 재정수지 조사
- 92. 행정지도 관리 및 통계간행물 발간

- 93. 규제개혁
- 94. 행정혁신 업무
- 9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 96.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7조에 제53호부터 제55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3.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시
- 54.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 55. 개별지가열람 및 확인원 발급

제8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2호중 “지적정리 및 지가조사”를 “지적정리”로 한다.

제10조제1호 “농림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농림부시책 대민 홍보”를 “농림수산식품부 시책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조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3호중 “국(농림부)소관 재산관리”를 “국(농림식품부)소관 재산관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7호 및 제1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7.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158. 신활력사업 추진

제12조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6호부터 제59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6.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 57. 농어촌 생활도로(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
- 58. 마을환경 정비사업
- 59. 기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사업

제13조제70호 “기타 건설과소관 토목사업”을 “기타 건설도시과소관 토목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7호 “도시계획사업 측량 및 설계감독”을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1호 및 제8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에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시설물 관리

제15조제1항중 “지방의무서기관”을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농촌지도과와 농업기술과”를 “연구기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농촌지도과장 및 농업기술과장”을 “연구기술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소장 등 사무분장)①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기술보급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평가
3. 소내 서무, 문서, 인사, 예산 및 회계 관인관리
4. 농촌진흥시책 홍보
5. 인쇄물 교재발간 및 활용
6. 농업방송, 신문보도
7.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8. 농업인회사법인 및 조합법인 관리지도
9. 농가경영 조사, 분석 및 개선지도
10. 농업전산기술개발 및 전산활용 지도
11. 경영상담실 및 농업정보실, 농업도서실 운영관리
12. 농촌지도자,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13.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지도(교육, 행사, 연합회 활동지도)
14. 4-H조직 육성, 4-H연합회 운영 및 활동지도
15.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16. 농민훈련에 관한 사항
17. 농기계 훈련 및 수리 지원
18.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19. 농업인 교육 및 행사
20. 귀농인 상담, 교육, 창업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21. 새해영농설계교육 지도
22.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23.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24. 농기계정비공과등 직업훈련생 지원
25. 농기계 교육(순회수리교육, 실수요자교육, 부녀자교육)
26.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 지도관리
27.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
28. 한해대책용 양수기 관리
29. 기타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0.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31.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및 가공상품 개발
32. 지역특화작목의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33. 현장애로 기술개발

34.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시험
35. 기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6.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37.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8. 영양식품의 가공조리 및 저장방법 지도
39. 농촌 식생활 및 의생활 개선지도
40. 농촌여성 노동관리 개선지도
41. 농촌여성 소득사업 지도
42.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43. 생활개선회 조직 및 육성지원
44.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지원
45. 농촌 작업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지도
46. 농촌가정관리 및 육아지도
47. 병해충 예찰업무
48. 정부보급종자 신청 및 보급
49. 채종포 관리
50. 식량작물 재배·생산등 기술지도
51. 식량작물시범사업 설계 및 추진
52. 고도기술벼농사 시범
53. 기상조사, 기상자료 관리 및 기상재해에 관한 지도
54. 병해충예찰실 운영 및 작물보호 지도
55. 농작물병해충 예찰, 발생정보 확산 및 방제기술지도
56. 병해충종합관리 기술지도
57. 식량 및 소득작물 병해충 관찰포 설치 및 발생상황 조사
58. 벼·소득작물 예찰포 설치운영
59. 농약안전사용 및 환경오염방지 기술지도
60. 토양 개량 및 시비법 개선지도
61.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62. 기타 식량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63. 토양검정 및 종합검정실 운영
64.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 지도
65. 토양, 식물체, 관개수 등 농업환경 실태조사 분석
66. 원예작물 재배·생산등 기술지도 (채소, 과수, 화훼)
67. 시설원예작물 재배·생산등 기술지도

- 68. 시범사업 설계 및 추진
- 69. 원예재배시설 현대화 기술지도
- 70. 고품질 생력재배 기술지도
- 71. 원예작물 안전저장 및 출하지도
- 72. 지역특화작목 개발 보급
- 73. 새품종, 새기술보급(전시포, 시범포 운영)
- 74. 유지작물, 버섯, 약용작물, 산채류 재배 생산등 기술지도
- 75. 섬유, 전매(담배,인삼)작물 재배 생산등 기술지도
- 76. 환경조화형 원예작물 기술보급
- 77. 최신 농업정보와 혁신사항 전파
- 78. 기타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 79. 과학영농시설 및 조직배양실 설치 운영

②연구기술담당관은 제1항 제14호부터 제79호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③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5항제1호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한다.

④정선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⑤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⑥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제16조제1호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⑦정선군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라목, 제7조,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 제48조제1항.

제2항·제3항·제4항, 제49조, 제59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제3항, 제70조제4항, 제93조, 제122조제1항·제2항 및 제130조제1항·제2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⑧정선군 지방세 세무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⑨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개 정 이 유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부서장의 직급 조정
 - 농업정책과장 : 지방농업 5급 → 지방행정·농업5급·지방농촌지도관
- 행정기구의 조정
 - 본청 기구중 미래기획단을 삭제함.
 - 농업기술센터의 하부조직인 농촌지도과와 농업기술과를 삭제하고, 연구기술담당관을 신설함.
- 사무의 조정
 - 기획감사실 “국제협력 관련업무”,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인구주택, 산업, 농업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고용구조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 “도시연감 자료조사 및 재정수지 조사”, “행정지도 관리 및 통계간행물 발간”을 삭제하고, “지방분권시책추진”, “균형발전 시책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군정 전략과제 개발사업 추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공무원 제안제도” 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자치행정과에 “제안제도 운영(제도개선 포함)”을 “제도개선 업무”로 하고, “국제협력 관련업무”,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인구주택, 산업, 농업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고용구조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 “도시연감 자료조사 및 재정수지 조사”, “행정지도 관리 및 통계간행물 발간”, “규제개혁”, “행정혁신 업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세무회계과에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개별지가열람 및 확인원 발급” 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민원봉사과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 “개별지가열람 및 확인원 발급” 업무를 삭제함.
- 농업정책과에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삭제하고, “신활력사업 추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산업경제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 업무를 삭제하고,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농어촌 생활도로(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 “마을환경 정비사업”, “기타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 건설도시과 “도시계획사업 측량 설계 감독”을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기타 건설과 소관 토목사업”을 “기타 건설도시과 소관 토목사업”으로 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삭제 한다.
- 재난안전관리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 시설물 관리”업무를 추가로 분장함.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08. 07. 25.

정선군규칙 제11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 정 이 유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주 요 내 용

- 총정원 : 564명 (△56명)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62명(△38명)
 - 의 회 : 11명(△ 1명)
 - 사 업 소 : 27명(△ 3명)
 - 직속기관 : 86명(△8명)
 - 읍 면 : 178명(△6명)

○ 감원되는 직렬·직급

- 일반직 5급 : 행정5급 △1명
- 6급 : 행정 6급 △9명, 행정·전산6급 △1, 행정·시설6급 △2, 농업6급 △1, 보건6급 △1
- 7급 : 행정7급 △6, 사회복지7급 △1, 농업7급 △1명, 시설7급 △2, 간호7급 △1, 행정·세무7급 △1, 공업7급 △1, 행정·농업7급 △2, 보건7급 △1, 의료기술7급 △1
- 8급 : 행정8급 △5명, 보건·간호8급△1, 보건8급 △1, 세무8급 △1, 행정·시설8급 △2, 농업8급 △1
- 9급 : 행정9급 △1명
- 지도직 : 농촌지도관 △1, 농촌지도사 △1
- 기능직 기능8급 : 운전 △2, 전기 △1, 기계 △2
- 기능9급 : 필기 △1, 운전 △2, 조무 △2

○ 정원 감축에 따른 직급별 비율 준수를 위한 직급조정

- 일반직 : 8급 △5, 9급 증5
 - 행정8급 △2 → 행정9급 증2
 - 환경8급 △1 → 환경9급 증1
 - 농업8급 △1 → 농업9급 증1
 - 의료기술8급 △1 → 의료기술9급 증1
- 기능직 : 기능7급 △2, 기능8급 △7, 기능9급 △2, 기능10급 증11
 - 기능7급(통신) △1 → 기능 9급(통신) 증1
 - 기능7급(전기·통신) △1 → 기능10급(전기·통신) 증1
 - 기능8급(통신) △1 → 기능10급(통신) 증1
 - 기능8급(전산) △1 → 기능10급(전산) 증1
 - 기능8급(운전) △4 → 기능10급(운전) 증4
 - 기능8급(토목) △1 → 기능10급(토목) 증1
 - 기능8급(기계) △1 → 기능10급(기계) 증1
 - 기능9급(교환) △1 → 기능10급(교환) 증1
 - 기능9급(필기) △1 → 기능 8급(필기) 증1
 - 기능9급(기계) △1 → 기능10급(기계) 증1

○ 직렬조정

- 농업 5급 △1 → 행정·농업5급·농촌지도관 증1
- 통신·전산 6급 △1 → 행정·통신·전산 6급 증1
- 녹지6급 △1 → 행정·녹지 6급 증1
- 행정·시설6급 △1 → 농업·시설6급 증1
- 농촌지도사 △1 → 행정6급·농촌지도사 증1
- 행정 7급 △2 → 행정·시설7급 증2
- 행정·공업7급 △1 → 행정7급 증1
- 공업8급 △1 → 행정·공업8급 증1
- 행정8급 △1 → 행정·사회복지8급 증1
- 행정·환경8급 △1 → 행정·시설8급 증1
- 전산·통신9급 △1 → 행정·통신9급 증1
- 기능6급(기계·운전) △1 → 기능6급(필기·조무) 증1
- 기능9급(필기)△1 → 기능9급(워드) 증1

정선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564	262	11	86	27	85	9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33	211	6	52	20	65	79
4급 소계	1	1	0	0	0	0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	1						
5급 소계	23	9	2	2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1			1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0	0					
행정.시설	3	3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간호	1			1			
6급 소계	118	65	3	8	5	17	20
행정	48	27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0			
시설	9	8			1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0	0					

기관별 직급별	총계	분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농업	7	1				1	5
행정.녹지	1	1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농업.지도사	2	1		1			
행정.지도사	1			1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7급 소계	132	69	1	17	7	15	23
행정	44	25	1		0	4	14
세무	6	6					
사회복지	4	2				2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4	4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0	12			2	2	4
통신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8	0		0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6	5				1	
전산.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보건.간호	1			1			
8급 소계	102	41	0	18	5	19	19
행정	27	11			1	7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3	3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4	7			1	4	2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8	4			0		4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보건.간호.의기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9급 소계		54	24	0	6	2	10	12
	행정	16	6				7	3
	세무	4						4
	사회복지	9	4				1	4
	사서	1	1					
	공업	3	1			2		
	농업	4	2				1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1			1			
	시설	4	3				1	
	행정.시설	1	1			0		
	전산.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1	1	0	0	0	0	0
연구사 소계		1	1	0	0			
	학예연구.별정	1	1					
지도직 계		19	2	0	17			
지도관 소계		2	0	0	2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7	2	0	15			
	농촌지도사	15	2		13			
	생활지도사	2			2			
별정직 계		12	0	0	12	0	0	0
6급상당 소계		11			11			
	보건진료원	11			1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98	47	5	5	7	20	14
6급 소계		3	3	0	0	0	0	0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0						
	필기.조무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7급 소계	9	6	0	1	2	0	0
토목	1	1					
통신	0	0					
전기	0	0					
기계	0	0					
운전	2	1		1			
필기	0	0					
조무	2	1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급 소계	13	5	1	0	1	6	0
토목	1	0			1		
통신	0	0					
전기	0	0					
기계	2	0		0		2	
영사	1	1					
운전	4	0	0	0		4	0
필기	2	2					
전산	0	0					
조무	3	2	1				
9급 소계	31	11	2	2	1	8	7
토목	3	3					
교환	0	0					
통신	1	1					
전기	1				1		
기계	4					1	3
운전	9	1	1	1		3	3
필기	3	2	0	1			
워드	1		1				
전산	1	1					
조무	8	3		0	0	4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10급 소계	42	22	2	2	3	6	0
토목	1	1					
통신	1	1					
교환	1	1					
전기	2	1			1		
기계	4				2	1	
화공	0			?			
난방	1	1					
운전	8	3		2		1	
위생	0	0					
워드	2	1	1				
전산	1	1					
필기	4	4					
조무	15	6	1	0		4	4
지도	1	1					
통신.전기	1	1					

정선군고시 제2008-63호

고 시 문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07월 15일

정 선 군 수

시행 (점용· 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 표 자	북면장	주 소	정선군 북면 여량리 305-3번지
하 천 명		골지천(지방2급하천)		
공사 (점용· 사용) 개요	위 치	정선군 북면 여량리 산7-6번지 일원		
	면 적	A=620m ²	폐천 부지 예상 면적	□□없 음□□
	기 간	2008년 07월 15일 ~ 영구		
	목 적 및 사 유	야생화 소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하천부지점용		

정선군고시 제2008-67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2007회계연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07. 23.

정 선 군 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1. 결산개황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㉑	세입결산액 ㉒	세출결산액 ㉓	잉여금 ㉔-㉓
합 계	382,882,397,005	385,060,268,906	291,944,566,329	93,115,702,577
일반회계	347,903,377,665	350,716,424,870	267,396,786,489	83,319,638,381
특별회계	34,979,019,340	34,343,844,036	24,547,779,840	9,796,064,196
상수도사업	11,473,981,000	11,274,582,316	7,376,170,630	3,898,411,686
기타특별회계	23,505,038,340	23,069,261,720	17,171,609,210	5,897,652,510
수질개선	19,872,511,340	19,580,452,195	15,814,648,710	3,765,803,485
의료급여기금	624,773,000	624,131,140	598,308,410	25,822,730
주택사업	104,116,000	101,473,519	0	101,473,519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1,138,637,000	923,647,678	181,547,590	742,100,088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110,779,000	110,941,434	25,979,800	84,961,634
주차장	654,222,000	748,252,524	29,005,770	719,246,754
기반시설부담금	500,000,000	480,250,080	26,307,880	453,942,2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0,000,000	500,113,150	495,811,050	4,302,100

2.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세입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합 계	382,882,397,005	390,694,074,491	385,060,268,906	5,633,805,585
일반회계	347,903,377,665	354,630,331,680	350,716,424,870	3,913,906,810
특별회계	34,979,019,340	36,063,742,811	34,343,844,036	1,719,898,775
상수도사업	11,473,981,000	11,478,402,546	11,274,582,316	203,820,230
기타특별회계	23,505,038,340	24,585,340,265	23,069,261,720	1,516,078,545
수질개선	19,872,511,340	20,088,504,225	19,580,452,195	508,052,030
의료급여기금	624,773,000	624,131,140	624,131,140	0
주택사업	104,116,000	761,760,664	101,473,519	660,287,145
광산근로자임대 아파트관리운영	1,138,637,000	923,647,678	923,647,678	0
농공단지조성및 관리사업	110,779,000	110,941,434	110,941,434	0
주차장	654,222,000	994,480,124	748,252,524	246,227,600
기반시설부담금	500,000,000	581,761,850	480,250,080	101,511,770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500,000,000	500,113,150	500,113,150	0

나. 세출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253,924,322,000	382,882,397,005	291,944,566,329	68,965,536,353	21,972,294,323
일반회계	222,286,773,000	347,903,377,665	267,396,786,489	66,082,510,543	14,424,080,633
특별회계	31,637,549,000	34,979,019,340	24,547,779,840	2,883,025,810	7,548,213,690
상수도사업	10,763,981,000	11,473,981,000	7,376,170,630	1,144,744,800	2,953,065,570
기타특별회계	20,873,568,000	23,505,038,340	17,171,609,210	1,738,281,010	4,595,148,120
수질개선	17,241,041,000	19,872,511,340	15,814,648,710	1,734,092,060	2,323,770,570
의료급여기금	624,773,000	624,773,000	598,308,410	0	26,464,590
주택사업	104,116,000	104,116,000	0	0	104,116,000
광산근로자임대 아파트관리운영	1,138,637,000	1,138,637,000	181,547,590	0	957,089,410
농공단지조성 및관리사업	110,779,000	110,779,000	25,979,800	0	84,799,200
주차장	654,222,000	654,222,000	29,005,770	0	625,216,230
기반시설부담금	500,000,000	500,000,000	26,307,880	0	473,692,12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00,000,000	500,000,000	495,811,050	4,188,950	0

다. 기능별·성질별 현황

(1) 일반회계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계	수납금액	비율	계	지출금액	비율
	350,716,424,870	100%		267,396,786,489	100%
1. 지방세	25,518,706,400	7.28%	기 능 별	1. 일반행정비	48,727,098,564 18.22%
보통세	23,780,827,640			2. 사회개발비	102,571,662,689 38.36%
목적세	1,447,387,480			3. 경제개발비	111,604,291,886 41.74%
과년도수입	290,491,280			4. 민방위비	630,258,260 0.24%
2. 세외수입	158,899,019,220	45.30%	성 질 별	5. 지원및기타	3,863,475,090 1.44%
재산임대	372,351,500			1. 인건비	27,853,775,430 10.42%
사용료	1,530,362,564			2. 물건비	13,519,246,897 5.05%
수수료	830,258,520			3. 이전경비	34,856,629,691 13.04%
사업수입	6,468,533,154			4. 자본지출	182,521,536,611 68.26%
징수교부금	410,953,140			5. 보전재원	2,500,000,000 0.93%
이자수입	5,032,618,699			6. 내부거래	5,417,870,000 2.03%
재산매각	1,102,329,420			7. 예비비및기 타	727,727,860 0.27%
순세계잉여금	13,969,267,000				
이월금	126,418,101,986				
융자금	82,380,000				
부담금	727,553,600				
잡수입	614,519,337				
과년도수입	1,339,790,300				
3. 지방교부세	82,534,631,000	23.53%			
4. 재정보전금	3,393,569,000	0.97%			
5. 보조금	80,370,499,250	22.92%			
국비보조금	59,523,869,030				
도비보조금	20,846,630,220				

(2)특별회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비고
합 계	34,979,019,340	34,343,844,036	24,547,779,840	
상수도사업	11,473,981,000	11,274,582,316	7,376,170,630	
기타특별회계	23,505,038,340	23,069,261,720	17,171,609,210	
수질개선	19,872,511,340	19,580,452,195	15,814,648,710	
의료급여기금	624,773,000	624,131,140	598,308,410	
주택사업	104,116,000	101,473,519	0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운영	1,138,637,000	923,647,678	181,547,59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110,779,000	110,941,434	25,979,800	
주차장	654,222,000	748,252,524	29,005,770	
기반시설부담금	500,000,000	480,250,080	26,307,88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0,000,000	500,113,150	495,811,050	

3. 주민 부담 상황

가. 세목별 군세 징수현황

(단위:원)

세목별	징수목표액 ㉠	부과액 ㉡	징수액 ㉢	불납결손액 ㉣	미 수 액 ㉠-(㉢+㉣)
계	25,112,240,000	26,810,458,830	25,518,706,400	446,255,890	845,496,540
주민세	13,710,000,000	12,904,375,310	12,650,076,510	90,196,640	164,102,160
재산세	2,450,000,000	3,156,094,000	3,008,525,380	3,611,640	143,956,980
자동차세	1,510,000,000	2,088,382,380	1,820,971,880	5,758,760	261,651,740
도축세	42,240,000	61,141,800	61,141,800	0	0
담배소비세	4,000,000,000	4,135,917,400	4,135,917,400	0	0
주행세	2,050,000,000	2,104,109,920	2,104,109,920	0	0
종합토지세	0	378,840	84,750	0	294,090
도시계획세	400,000,000	547,494,630	506,506,150	480,330	40,508,150
사업소세	800,000,000	943,092,250	940,881,330	0	2,210,920
과년도수입	150,000,000	869,472,300	290,491,280	346,208,520	232,772,500

나. 군세 부담액 현황

(단위:원,명,세대)

주민1인당 부 담 액	세대당 부담액	인구수 및 세대수		비고
		인구수	세대수	
606,894	1,408,783	42,048	18,114	

4. 채권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07년 운용상황		2007년도말 ㉠+㉡-㉢
		발생액㉡	소멸액㉢	
계	882,936,772	1,267,531,400	22,038,204	2,128,429,968
일반회계	0	1,267,531,400	0	1,267,531,400
특별회계	696,403,522	0	11,501,106	684,902,416
기 금	186,533,250	0	10,537,098	175,996,152

5. 채무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07년 운용상황		2007년도말 ㉠+㉡-㉢
		발생액㉡	소멸액㉢	
계	15,000,000,000	0	2,500,000,000	12,500,000,000
일반회계	15,000,000,000	0	2,500,000,000	12,500,000,000
특별회계	0	0	0	0
기 금	0	0	0	0

6. 기금 운용 상황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계	수납액	지출액	
합 계	14,449,094,456	4,497,253,546	4,625,359,546	128,106,000	18,946,348,002
사회복지기금	3,438,235,982	189,791,444	284,251,444	94,460,000	3,628,027,42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27,948,292	18,120,270	45,120,270	27,000,000	146,068,562
청사관리기금	6,069,047,847	3,044,243,610	3,044,243,610	0	9,113,291,457
재난관리기금	614,498,859	245,729,910	245,729,910	0	860,228,769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4,079,747,080	1,000,558,180	1,000,558,180	0	5,080,305,260
식품진흥기금	119,616,396	△1,189,868	5,456,132	6,646,000	118,426,528

7. 공유재산 상황

가. 공유재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㉑	2007년도 증감액		2007년말 현재액 ㉑+㉒-㉓	
		증㉒	감㉓		
계	342,628,355	202,788,190	11,908,904	533,507,641	
행정 재산	소 계	100,891,317	183,716,881	6,119,547	278,488,651
	공공용재산	54,945,194	65,560,425	5,184,172	115,321,447
	공용 재산	44,725,537	115,973,315	0	160,698,852
	기업용재산	1,220,586	2,183,141	935,375	2,468,352
보 존 재 산	158,113	10,494	158,113	10,494	
잡 종 재 산	241,578,925	19,060,815	5,631,244	255,008,496	

나. 물 품

(단위:개, 천원)

정수	전년도말현재액 ㉑		2007년도 증감액				2007년말 현재액 ㉑+㉒-㉓	
	건수	금액	취득㉒		처분㉓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6	139	1,278,393	172	1,972,057	43	232,103	268	3,018,347

※ 대상물품 : 33개 정수물품[2007년도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수급관리계획작성기준]

8. 공기업 운영현황(상수도사업)

가.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07년도(당기)	2006년도(전기)	
1. 유동자산	4,152,167,592	2,570,077,924	1,582,089,668
가. 당좌자산	4,133,643,092	2,540,638,364	1,593,004,728
○ 현금예금	3,898,411,686	2,075,553,171	1,822,858,515
○ 세입세출외현금	28,147,820	32,601,763	△4,453,943
○ 대손충당금(미수금)	187,268,790	184,783,430	2,485,360
○ 미수수익	19,814,796	0	19,814,796
○ 선 금 급	0	247,700,000	△247,700,000
나. 재고자산	18,524,500	29,439,560	△10,915,060
○ 저장품	18,524,500	29,439,560	△10,915,060
2. 고정자산	39,727,619,685	39,672,741,417	54,878,268
가. 투자자산	324,000	324,000	0
나. 가동설비자산	39,727,295,685	39,672,417,417	54,878,268
자 산 총 계	43,879,787,277	42,242,819,341	1,636,967,936
1. 유동부채	28,147,820	32,601,763	△4,453,943
가. 예수금	28,147,820	32,601,763	△4,453,943
2. 고정부채	0	0	
부 채 총 계	28,147,820	32,601,763	△4,453,943
1. 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가. 원시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2. 자본잉여금	37,960,925,705	39,508,130,404	△1,547,204,699
가. 국고보조금	6,412,340,000	6,412,340,000	0
나. 도비보조금	1,309,694,000	1,309,694,000	0
다. 타회계보조금	23,772,360,800	22,272,360,800	1,500,000,000
라. 시설분담금	973,543,800	928,423,800	45,120,000
마. 원인자부담금	676,000,000	676,000,000	0
바. 채평가적립금	2,113,088,247	5,417,370,046	△3,304,281,799
사. 기부금	2,703,898,858	2,491,941,758	211,957,100
3. 결손금	115,655,221	3,304,281,799	△3,188,626,578
자 본 총 계	43,851,639,457	42,210,217,578	1,641,421,879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07년도(당기)	2006년도(전기)	
1. 영업수익	6,069,283,330	4,865,639,000	1,203,644,330
가. 급수수익	5,741,585,030	4,677,733,930	1,063,851,100
나. 급수공사수익	211,104,570	171,953,240	39,151,330
다. 기타영업수익	116,593,730	15,951,830	100,641,900
2. 영업비용	7,796,157,492	7,063,261,213	732,896,279
가. 원수및취수비	618,385,850	0	618,385,850
나. 정수비	2,445,640,690	4,363,691,700	△1,918,051,010
다. 배수비	1,399,690,550	0	1,399,690,550
라. 일반관리비	1,005,345,570	964,516,250	40,829,320
마. 정수및수용가관리비	453,045,150	0	453,045,150
바. 급수공사비	211,957,100	161,594,000	50,363,100
사. 감가상각비	1,656,873,412	1,570,494,873	86,378,539
아. 대손상각비	4,292,970	2,964,390	1,328,580
자. 기타영업비용	926,200	0	926,200
3. 영업손실	1,726,874,162	2,197,622,213	△470,748,051
4. 영업외수익	1,611,218,941	2,275,728,401	△664,509,460
가. 이자수익	111,218,941	60,787,401	50,431,540
나. 타회계전입금수익	1,500,000,000	2,214,941,000	△714,941,000
5. 영업외비용	0	757,933	△757,933
6. 경상손실	115,655,221	△77,348,255	193,003,476
7. 특별이익	0	10,664,090	△10,664,090
8. 특별손실	0	0	0
9. 당기순손실	115,655,221	△88,012,345	203,667,566

정선군공고 제2008-427호

**관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중 장기 미개발지구
민자유치계획 사업제안서 제출 공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민자유치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미개발지구의 민자유치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07. 16.

정 선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고토일복합리조트개발사업	고한읍 고한리 산2-1번지 일원	4,870,280	
남면관광레저리조트개발사업	남면 무릉리 산 475번지 일원	5,020,000	
단곡휴양단지개발사업	신동읍 방제리 산 87-1번지 일원	277,600	

2. 사업의 주요내용

사 업 명	주 요 사 업 내 용
고토일복합리조트개발사업	스키장(16면), 골프장(18홀), 관광호텔, 스포츠센터 등
남면관광레저리조트개발사업	스키장(18면), 호텔, 콘도, 문화체육스포츠센터 등
단곡휴양단지개발사업	산림욕장, 전망대, 야영장, 콘도, 전시관, 자연관찰원등

3. 사업제안서 제출 방법 및 자격

○ 사업제안서 제출서류

- 1) 제안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2)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명
- 3)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시행방법
- 4) 사업시행기간
- 5) 사업계획서
- 6) 자금조달계획서

- 7)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분·사용계획서
- 8)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명세서
- 9) 주변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업계획서
- 10)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11)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제출부수 : 20 부
 - 제출자격 : “제한없음”
 - 제출처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사업제안자 선정 방법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정선군투자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제안자를 민자유치 예비사업자로 선정

5. 기 타

- 제출서류의 관리
 - 제출된 제안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관련도면,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작성서식은 정선군에 비치
 - 최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개발계획의 경우 사업의 내용 및 개발지구의 면적 변경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반절차 군에서 행정지원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정선군청 산업경제과(033-560-2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433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8년 07월 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공포(2008.4.18) 및 시행(2008.5.18)됨에 따라,
- 나. 동법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삭제(안 제4조)

-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수정하여 공사 수행에 대한 기성의 지급은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됨에 따라 심의사항 일부삭제.

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기준 완화(안 제27조)

- 주거용건물은 종전의 경우에는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를 적용 하였으나,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다.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감액율) 확대(안 제3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당해년도 사용·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 되었는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임.
 - 경작용, 생산·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확대(안 제39조)

-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감안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1989년 1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범위확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8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전화 560-2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에서 “주거용으로” 한다.

제33조 본문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100분의 7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본문중 “1981년4월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를 “1989년1월24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본 호의 2,000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08-440호

-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8. 7. 23. ~ 2008. 8. 06.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 부과처분예고서 공시송달	
2. 당사자	성 명	황숙이 (480325-2*****)
	주 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4-3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06-12 2호 건물에 대해 등기해태 사실이 확인되어 2008.07.0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태과태료 사전예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우편물 반송됨.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 033) 560-225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23.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8-445호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공시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정선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공고합니다.

2008. 07. 25.

정 선 군 수

□ 200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조정 결정·공시 공고

- 1. 공시(가격)기준일 : 2008년 1월 1일
- 2. 이의신청 조정필지 : 정선읍 봉양리 357-11번지 외 38필지
- 3. 공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²)당 가격(원) / 내역별첨
- 4. 공시방법 : 공고문 게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 구제신청방법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관하여 정선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3-560-2256, 2267, 2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8-446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2008. 07. 25.

정 선 군 수

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2년~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38-1번지 외31필지

다. 공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²)당 가격(원)

라. 공시방법 : 공고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공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8. 8.

31. 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33-560-2256, 2267, 2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